

**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  
**임시주주총회의사록**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: 2018년 11월 29일 오후 5시

장 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(권선동) 소재 본점 회의실

주 주 총 수	:	4명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	:	30,000주
출석 주 주 수	:	4명
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	:	30,000주

의장인 대표이사 한정수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**제1호 의안: 자산관리위탁계약 체결의 건**

의장은 회사가 2018. 11. 15.자로 발효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취지에 따라 별첨 1.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체결한 2018. 11. 21.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대체할 계획임을 설명하고,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, 교부 및 그 조건에 따라 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승인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 중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(9,000주)를 제외한, 나머지 주주들(21,000주)은 계약서의 제반 조건을 검토한 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**결의사항:** 의장의 제안대로 동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, 교부 및 이행을 승인한다.

제2호 의안: 정관 개정의 건

의장은 별첨 2. 정관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고, 이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.

이에 출석 주주들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.

결의사항: 의장의 제안대로 정관 개정안에 따른 정관 개정을 승인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오후 5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- 별첨: 1.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
2. 정관 개정안

2018년 11월 29일

주식회사 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대 표 이 사 한 정 수

